



##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규정

제정일	2023. 2. 1
개정일	2024. 3. 1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원격교육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학칙 제22조의 6(원격수업) 및 제25조(수업) 제1항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원격수업 : 방송 ·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
  2. 비대면수업 : 감염병 등에 따른 위기단계 발생 또는 국가적 재난 발생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형태의 수업
  3. 블랜디드러닝 :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한 형태의 수업
  4. 플립러닝 : 온라인 사전학습 형태의 수업
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격수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1.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 ·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
  2. 대면수업의 보조수단(수업자료 탐색, 질의 · 응답, 토론 등)으로서 방송 ·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

제 3조 (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) ① 원격수업 교과목은 직무역량평가(1차 및 2차)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 · 학습 활동의 70%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. 단, 필요시 블랜디드러닝 및 플립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.

- ②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.  
③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전임교원으로 제한한다. 단, 분반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비전임교원이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 4조 (수강신청 및 학점) ① 수강신청은 우리대학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운영한다.

- ② 원격수업은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학점을 포함하여 학기당 4학점 이내, 재학 중 총 10학점 이내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. 단, 교양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5조 (수강인원 및 폐강 등) ① 원격수업 강좌 당 최대 수강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한다. 단, 분반 및 합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- ② 원격수업 강좌의 폐강기준은 25명 미만으로 한다.

제 6조 (성적 부여 및 평가기준) 원격수업 강좌의 성적 부여 및 평가기준은 우리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 성적부여 및 평가기준에 의한다.

제 7조 (대학 간 원격수업 학점인정) 공유 · 협업 등의 목적으로 대학 간 학점인정 협약 등에 의하여 개설되는 원격수업 교과목의 콘텐츠 개발 시기, 개설 기준, 수강신청 및 학점, 수강인원, 성적 부여 및 평가기준, 교수자 등은 협약서 및 본 대학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8조 (강의평가) ① 원격수업 전체 강좌에 대하여 학기당 1회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4. 3. 1)

- ② (삭제 2024. 3. 1)

제 9조 (원격수업의 운영) ①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시간은 수업 콘텐츠, 과제, 퀴즈 등 수업관련 상호작용을 합하여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② 원격수업 교과목을 계절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 (콘텐츠 품질관리) 최초 운영학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콘텐츠에 대하여 평가하고 유지, 개선, 폐기, 신규개발 여부를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외부 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준) 타 대학 제작 영상 및 타 플랫폼 탑재 영상 등은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.

제12조 (저작권) ① 대학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원격수업 콘텐츠의 저작권은 대학으로 귀속된다.

② 원격수업 콘텐츠를 정보통신매체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시 해당 교원은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영상, 이미지, 폰트 및 관련 자료를 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개인정보보호) ① 본교 “개인정보보호규정”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원격교육 데이터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
③ 원격교육 데이터가 위조, 변조, 훼손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4조 (보칙) ① 원격수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 관련 학사운영 기준을 준용한다.

② 비대면수업의 운영 및 관리는 이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원격수업 운영 규정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)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원격수업 운영 규정은 폐지하며 2023년 2월 1일 이전 원격수업 운영은 종전 규정에 의거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